

제 296 호

10. 20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39호
등록년월일 1959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공
인쇄 서울

제례

△조례	3
제 599 호 서울특별시 관광유체소 조례	
△규칙	4
제 858 호 서울특별시 직제충 개정	
제 859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충 개정	
제 860 호 서울특별시 소방서 조직규칙충 개정	
제 861 호 서울특별시 표찰준비 시행규칙충 개정	
제 862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충 개정	
제 863 호 서울특별시 의제충 개정	
제 864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충 개정	
△통령령	20
제 262 호 서울특별시 경찰부 파출소 외근경찰관 성적평가 규정	
△사명	40
△고시	76
제 82 호 도시계획소로 일부 변경	

제 83 호 일 단위 주택지 경영사업지내 가로 일부 변
경 및 실시 계획인가

제 84 호 일 단위 주택지 경영사업 집행자 변경

제 85 호 사료 등록

△ 공 고 80

제 243 호 환지 일부 변경

제 246 호 수유지구 청 산 금액 결정 통지서 공시 송달

제 248 호 세 목 공고

제 253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제 254 호 분묘이상 공고

제 255 호 세 목 공고

제 258 호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제 261 호 세 목 공고

제 264 호 청 산 수입 독촉장 공시 송달

제 265 호 청 산 수입 독촉장 공시 송달

제 266 호 세 목 공고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관광휴
제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969년 11월 11일

⑤서울특별시조례제 599호

서울특별시 관광휴제소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내외관광객을 위하여 신치
한 관광휴제소(이하 «휴제소»라 한다)를 효율적
으로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 이 휴제소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가
할 수 있다.

제 3 조 (사용료) ① 휴제소내의 번소는 다음의 사용료
를 징수한다.

- | | | |
|--------|----|-----|
| 1. 대 인 | 1회 | 5 원 |
| 2. 소 인 | 1회 | 3 원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창의 사용료
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직제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1969년 11월 15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558 호

서울특별시 직제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3 조제 2 항 제 3호 «아» 다음에 «자»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자. 민방공 기구 조직 및 운영

제 54 조제 2 항 제 2호 «사»를 삭제하고 «아» «자» «차» «카» «타» «화» «하» «거» «너»를 각각 «사» «아» «자» «히» «카» «타» «하» «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함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96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859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중 교동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 다음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 3 호를 제 4 호로 제 4, 5, 6 호를 각각 5, 6, 7 호로 한다.

3. 교동파에는 교동제를 둔다.

별표 1 중 보안파교동제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별표 1 중 보안파소년제 다음에 교동파교동제 분장사무
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과별	제별	분장사무
교동	교동	1. 교동경찰관 제도교양감독에 관한 사항 2. 교동소동 3. 교동법규위반자 시도나속에 관한 사항 4. 교동사고처리 5. 교동안전시설관리 및 단선대책

			에 관한 사항
		6.	차량 행정처분 집행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교통 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통 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통 안전 사무에 관한 사항
동표 1 경비과 작전		경비제 분장 사무 중 10·11·12·13· 14·15·16·17·18을 소거하고 19·20·21·22· 23을 각각 10·11·12·13·14로 한다.	
동표 1 경비과 방위 제		분장 사무 중 ⑥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과별	제별	분장 사무	
경비	방위	7.	방공 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공 경보 및 감시에 관한 사항
		9.	방공 사상·선전·제동에 관한 사항
		10.	소개비난 민교통에 관한 사항
		11.	중·요 물자와 인신 방호에 관한 사항
		12.	방독구호에 관한 사항
경비	방위	14.	직장 방공 단체에 관한 사항
		15.	방공 단속지도에 관한 사항
		16.	응급 구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아래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969년 11월 15일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860호

서울특별시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 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소방과 소방서 문장사무 중 「 13 ~ 17 」 을
하고 「 18 」 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18. 연금에 관한 사항

동표1 소방과 장비과 문장사무 중 「 7 」 을 삭제하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을 각각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로 한다.

동표1 방호과 방호계 문장사무 중 「 10 」 을 삭제하고
11. 12.를 각각 10. 1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포장조례시 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96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861호

서울특별시 포장조례시 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포장조례시 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제 2항제 1호중 「2만원이내」를 「5만원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96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86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3급감독관 「지방행정서기관」을 「10」으로 하고
「제 25」를 「26」으로 한다.

3 금율류란 「지방행정사무관 207」 을 「209」로 「지방건축기과 12」를 「14」로 하고 「제362」를 「366」으로 한다.

4 금감류란 「지방행정주사 667」 을 「669」로 「지방지적기사 3」을 「6」으로 하고 「제1063」를 「1068」로 한다.

4 금불류란 「지방행정주사보 584」를 「589」로 하고 「제1111」을 「1116」으로 한다.

5 금감류란 「지방행정서기 1143」 을 「1148」로 하고 「제1816」을 「1821」로 한다.

5 금불류란 「지방행정서기보 1696」 을 「1702」로 「지방지적기원보 6」을 「3」으로 하고 「제2591」 을 「2594」로 한다.

합계란 「1급내지 5급제 6979」 을 「7002」로 「기능직공무원 제 433」을 「426」으로 「교용원제 1334」 을 「1340」으로 하고 「합계 9053」 을 「907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계종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천 육

196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863 호

서울특별시 직제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중 「통제과장은 통제서기관」을 「통제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통제서기관」으로 한다.

제 12 조 제 2 항 제 5 호 「기획재정부」 「아. 지방재정」을 신설한다.

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 조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서무과, 도시계획과, 구획설비과, 청약제 1과와 건축제 2과를 둔다.

② 국장은 시설기술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서무파장과, 건축제 1파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노시계획과장과 구획설비파장은 토목기술으로 건축제 2파장은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제 16 조 제 2 항 제 4 호 「기획재정부」 「라. 사도축조 및 폐도에 관한 사항」을 「라. 사도축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 18 조와 제 18 조 위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건축제 1과) ① 건축제 1과에 건축행정제와 건축개량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건축제 1과의 세번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제

가. 공영주택건설의 종합계획

- 나. 아파트건설사업소의 법체 예산난의 조정
- 다. 아파트건설사업소의 주택건설자금 기체 및 상환에 관한 지도
- 라. 주택의 통제
- 마.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 바. 상가아파트에 관한 사항
- 사. 구청의 건축행정지도
- 아. 과내 타제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개량제

- 가. 무허가건축물 정리
- 나. 철거민 수용
- 다. 불량주택의 개량제회
- 라. 기타 무허가건물 및 불량주택 정리에 관한 사항

제 18 조의 2 (건축제 2 파) ①건축제 2 파에 서무처는 건축제 1 제와 건축제 2 내용을 두고 서무제장은 지방경찰서 관으로 건축제 1 차장과 건축제 2 차장은 시장건축기과로 보한다.

②건축제 2 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처
 - 가. 건축에 관한 제증명 발급
 - 나. 건축에 관한 각종통제
 - 다. 건축에 관한 소원 소송처리

라. 전축사지도

- 마. 전축법 및 기타 규정의 심사 조정
바. 국내 타제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제 1 제

- 가. 일반건축물허가 및 준공검사
나. 응벽 및 공자들에 관한 허가 및 준공검사
다. 건축신 지정

3. 건축제 2 제

- 가. 특수건축물허가 및 준공검사
나. 석축허가 및 준공검사
다.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라. 구조에 관한 규정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 (보건사회국) ① 보건사회국이 사회과, 보건제 1 과, 보건제 2 과, 의약과와 부녀과를 둔다.

②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사회과장, 보건제 2 과장과 부녀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건제 1 과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보건기정으로 의약과장은 의무기정으로 보한다.

제 24 조 제 2 항 제 1 호 사회계 분장사무증 "바. 시립전당
포의 운영감독" 을 소·제하고 농조동항제 2 호 "아" 증
"노동회관" 을 "근로복지관" 으로 한다.

제 2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p>제 25 조 (보건체 1 과) ① 보건체 1 과에 위생체·방역체와 보건지도체를 두고 환경위생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체장은 지방 보건기과로 보건지도체장은 지방보건기과 또는 지방 간호기과로 보한다.</p> <p>② 보건체 1 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보건행정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건행정의 종합조정 나. 보건소·위생시험소·방역사무소 지사무소운영의 지도감독 다. 과내 타제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환경위생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위생업소 허가 나. 환경위생업소 위생검찰 다. 이용사·미용사의 양성과 자격 라. 대기 및 하천오염대책에 관한 사항 마. 공해방지 및 특수공해대책에 관한 사항 바. 공해업소의 지도감독 <p>3. 방역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종 질병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나. 업계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성호 및 공설공중당 관리 <p>4. 보건지도체</p>	<p>보건행정체·환경 보건지도체장과 환경위생체장은 지방 보건기과로 보건지도체장은 지방보건기과 또는 지방 간호기과로 보한다.</p> <p>각호와 같다.</p> <p>상재장 및 보</p>
---	--

- 가. 산업보건·모차보건 및 보건간호사업 지도
- 나. 기생충의 구제와 예방
- 다. 가축체육지도
- 라. 시민건강 운동
- 마. 정신위생 우생보호

제 26 조를 제 27 조로 하고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 조 (보건체 2 파) ①보건체 2 파에 식품위생제와 식품지도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보건체 2 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제

- 가. 식품위생업소 허가
- 나. 영양사 및 조리사의 양성과 자격
- 다. 국내 타제주 관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식품지도제

- 가. 시민영양의 개선조사, 식생활의 지도
- 나. 식품위생의 지도
- 다. 각종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찰
- 라. 부정식품 단속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 (산업국) ①산업국에 상무파, 공업파, 연료파, 농정파, 양정파, 물동기제파와 녹지파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녹지파

장은 행정서기관 또는 임업기장으로 물동경제과장은
제경서기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 기타과장은 행정서
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상무과) ①상무과에 상정책·도매시장체와 제
량체를 두고 상정책장과 도매시장체장은 지방임성사
무관으로 제량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
기과로 보한다.

②상무과의 제별문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정책

-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나. 일반시장에 관한 사항
- 다. 일반시장 및 백화점 개설허가
- 라. 시장관계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 마. 과내 서무와 국내 타과제주관에 둘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도매시장체

- 가. 도매시장운영 및 지도감독
- 나. 도매시장우보처 선정 및 개선
- 다. 도매시장 개발계획수립 및 품목조정
- 라. 회전기금 운영
- 마. 상공회의소 지도감독
- 바. 기타통협 및 수님공판사업과 연관된 사항

3. 재량제

- 가. 재량의 연구 및 조사
- 나. 재량기 검사 및 감정
- 다. 매 타법 실시에 관한 사항
- 라. 재량기 사업관리

제 35 조의 2 를 제 35 조의 3 으로 하고 제 35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5 조의 2 (물동경제과)
① 물동경제과에 분석제와 소비자보호제를 두고 제 35 조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물동경제과의 제별분과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석제

- 가. 물가조사 분석
- 나. 물가동향 분석
- 다. 물자수급계획의 조정
- 라. 공공요금의 산사조정
- 마. 서울특별시 시민경제 대체위원회 운영
- 바. 국내 타제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소비자보호제

- 가. 유통구조의 개선
- 나. 물가의 조정 단속
- 다. 소비자보호
- 라. 정찰계 실시 및 시범점포 운영
- 마. 상도의 양양

제 3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6 조 (건설국) ① 건설국에 관리제 1과, 관리제 2과, 토목과, 포장과, 하수과와 영선과를 둔다.

② 국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관리제 1과, 장과 관리제 2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토목과장, 포장과장과 하수과장은 토목기정으로 영선과장은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제 3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7 조 (관리제 1과) ① 관리제 1과에 진실공정제, 보상제와 증기관리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제 1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각각과 같다.

1. 건설행정제

- 가. 국소관 행정 및 예산의 승인조정
- 나. 진실공사용 기재의 구입 조성과 출납
- 다. 진실업자의 지도축성 및 감독
- 라. 국소판사업소의 지도감독
- 마. 과내 사무와 국내 나과제주관이 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상제

- 가. 도시계획사업에 수반한 시유재산의 수용과 보상 및 지적정리 (세토지구획정리 및 낙지소성사업)

3. 중기관리제

- 가. 건설공사용 각종 중기의 등록
- 나. 건설공사용 각종 중기의 검사
- 다. 중기 관제 각종 중기의 발급
- 라. 건설공사용 중기의 구입·정비운영 및 출납
- 마. 기타 중기의 관한 사항

제 37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관리제 2 과) ① 관리제 2 과에 시설관리제, 공지관리제와 유효도로제를 두고 제작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제 2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시설관리제

-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 유지관리
- 나. 지하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다. 육교·임체교차로 및 가-드레일 유지관리
- 라. 도로상의 환애물 정리
- 마. 과내·타제주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지관리제

- 가. 도로·하천·구역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 나. 소개지에 관한 사항
- 다. 도로의 폐도
- 라. 도로수익자부등금·하천부자점용료·도로사용료의

부과 및 자도감독

3. 유료 도로 제

- 가. 유료도로의 운영
 - 나. 유료도로 수입금의 세입
 - 다. 유료도로관리인의 업무 보수
 - 라. 기타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 중 개성규칙을 이내 공포
한다.

속 속 韓 韓 著 作

1969년 11월 27일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854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승개장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 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표술

다음과 같기 한다.

서울 서부경찰서 대조파출소 위치난승 「대조동 13 의 1」
을 「대조동 10 의 6」으로 한다.

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훈령

◎서울특별시 훈령 제 262 호.

경찰국

경찰서

서울특별시 경찰서 과출소 외근경찰관 성적평가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96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경찰서과출소

외근경찰관성적평가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외근경찰관의 업무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외근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능률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근경찰관이라 함은 과
출소에 근무하는 경위이하의 경찰관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비제) ① 일정한 행정관할이 없거나 임무
가 특정된 외근경찰관에 대하여는 그 임무의 특수
성에 따라 해당사항에 한하여 참고 평점하되 이
규정의 상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일이상 국내외시찰 및 교육훈련중에 있는자
2. 10일이상 유계결근 또는 타부서 보근자
3. 타부서에서 전입 또는 타부서 진출로 10일이상
유고자

제 4 조 (평점관리의 원칙) ① 평가는 외근일무의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별 항목은 실적 및 자질별로 분류하여 배점을 달리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평점사항과 감점사항을 구분 명확히 한다.

④ 특별대상분포에 따른 편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과출소등급제를 채택 운용한다.

⑤ 시범기능의 제도적 개선과 예비군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배점을 부여한다.

⑥ 정체양정미달의 감독상 직발사항은 감점하고 또 양미달의 현장사항은 가점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두도록 한다.

⑦ 실직주의의 결집과 임제능력의 보완책으로 외근주관자(외근주관과장 및 외근계장) 및 경찰서장의 재량독점을 인정한다.

제 5 조 (근무성적평가표) 외근성적평점표(이하 평점자라 한다)는 별표1에 의한 과출소장 평점표와 별표2에 의한 과출소 직원 평점표로 구분 작성한다.

제 6 조 (평점자와 확인자) 평점자는 경찰서의 의관 주 관제장이 되고 1차 확인자는 기능별 해당과 계장이 2차 확인자는 의관주관과장이 된다。

제 7 조 (평점의 시기) 평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익월에 실시한다.

제 8 조 (평점의 시기와 종기) 평점은 매년 10월 1일을 시기로 하여 익년 9월 말일을 종기로 한다.

제 9 조 (평점) 평점은 과출소를 각각 애이·비·시급으로 구분해점하여 별표 1, 2 평점자에 의하여 해점한다.

제 10 조 (등급기준) ①과출소의 등급은 별표 2의 평점표에 의하여 용이하게 50점을 득점할 수 있는 관할구역을 가진 과출소를 애이급, 45점을 득점할 수 있는 관할구역을 가지 과출소를 비급, 40점을 득점할 수 있는 관할구역을 가진 과출소를 시급으로 별표 3과 같다.
②책정된 등급이 사서변경으로 인하여 조정(재책정)을 요할 때에는 연도말에 1회 일관 시행한다.

제 11 조 (평점기준 승인) 평점자는 평점표에 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평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평점방법) 평점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직원성적은 별표2 파출소 직원평점표에 의하여 경찰서 해당파, 제에서 처리된 결과를 대조 환산 채점하여 개인별 종합성적을 산출 등급별 고득점 순위로 명부를 작성한다.
- 파출소장의 성적은 직원 총득점의 평균치(부수 득점)의 별표1 파출소장 평점표에 의하여 채점된 점수를 종합 등급별 고득점순위로 작성한다.
- 능률의 증진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득점의 상한선은 무제한으로 하되 직원은 예이급 50점, 비급 45점, 시급 40점으로, 파출소장은 예이급 65점, 비급 60점, 시급 55점의 하한선을 두나. 다만 사정에 따라 경찰국장은 하한선을 변경 가능할 수 있다.

제13조 (평점결과의 보고) 경찰서장은 별표1·2 평점표와 별표4에 의한 평균 순위자명부를 다음 각호 해당자분으로서 每월 10일 경찰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우수자: 직원 1위부터 10위까지
- 불량자: 책정하한선 미달자
- 파출소장: 등급별 고득점순위 신원

제14조 (심사) 경찰국장은 선조에 의한 보고문에 대하여 허위 또는 착오유누를 엿지 험지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 15 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전조에 의한 현지 인사에서 허위사실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득점의 무효와 징체처분이 발생한다.

제 16 조 (기록 및 활용) 경찰서 의관 주관과에서는 본기말 성적을 인사주관부서에 통보 이를 인사기록 카드에 부기하여 기찰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근무 및 적평 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평점결과의 인사반영) 평점결과 우수자 및 불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우수자 (평점대상자)

가. 월말국전체종합성적 1, 2, 3 위자 및 각서 1위자 (파출소장 제외)에 대하여는 경찰국장표창 및 부상

나. 분기말국전체종합성적 1, 2, 3 위자에 금, 은, 동상을 수여

다. 연도말국전체종합성적 우수직원은 특별승진 임용

2. 불량자 (평점등급별)

가. 월말에 경찰국이 제한한 하한선 해당자는 경찰서장의 제고증 별부

나. 분기말 2회이상 하한선 해당자는 경찰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인사조치

제 18 조 (평점의 공개) ① 의관 주관자가 평점한 결과는 미평점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쟁적인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자와 불량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하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외근주관제장의 평가) 외근주관제장의 근무 평가는 관하 외근경찰관의 성적에 의하여 6개월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평정되어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부 칙

1. (시정일) 이 규정은 196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실시한 평점일과는 이 규정에 의하여 평점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득점점) 파출소장 평점표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점 기준	비 고
(득점항목) 부수득점		직원의 득점평균을 기본득점으로 함。	
환경정리	감독자의 재방	우 5점, 양 3점, 가 2점	감독순시시 월간 전반을 통하여
교육훈련	소집교양 직장훈련포함	1인당 0.5점	
청소년지도	취업알선	취업 1명당 1점 (5점한)	
선행실탐	대외보도시 (신문, 라디오등)	1전당 3점	
시범파출소 운영	표 창	서장 2점 주장 5점	
상 훈	개인표장	서장 1점 · 시장 (국장) 3점 장관 (치안국장) 5점 총리대통령 10점	

		홍보상 15 점, 대의 3 점	
	파출소단체 표창	개인표창 특점의 1/2	
예비군운영	통계과악및일반상황	우 3 점 양 2 점 가 1 점	
	교육훈련상황	우 5 점 양 3 점 가 2 점	
	무기 관리사항 (공약지피비밀해당)	우 5 점 양 3 점 가 2 점	운영 불량으로서 감점시는 양 에 준할 것.
(감점 항목)	복장위반 저시명 명위반	내회당 1 점	
근태 및 복우규율	무단조퇴 지참	내회당 1 점	
	무단결근	* 2 점	
	근무결락	* 5 점	
	환경정리불량	* 2 점	
	시법파출소운영불량	월 간 5 점	
	임무과악불량	내회당 3 점	
	근무체화와 대의 사성	* 3 점	

항 목	세 부 사 항	개 점 기 준	비 고
	근무 계획의 작성 불량	대회당 2점	
소장 업무	조회 및 교양 불량	〃 1점	
	감독 확인 등 불량	〃 3점	
	보고지연 철학	〃 3점	
장비 관리	통신 기기 등 장비 관리 불량	매 견당 2점	
자체 사고	직원 사고포함	매 견당 10점	
정 계	경고(제고장포함)	매 회 5점	
	견 책	〃 10점	
	감봉	1 월 15점 3 월 20점 6 월 30점	

별표 2 (독점사항) 과출소직원 평점표

항 목	세 부 사 항	재 검 기 준	비 고
보안사법 단속	단속 전수 (노점·잡상포함)	즉시 회부로서 5 건 미만 3 점 10 건 까지 5 점 5 건 초과당 1 점	
	미아가 출연 등	처리 전수 3 명당 1 점	본국에 보고되어 수배된 분에 한 함
보호 및 수배	경인부방마 단속	단속 수령 소지 5 명당 1 점 (10 점屯) 수득물 유상 물자 대 처리 전수 1 점당 0.5 점	공공기관 애수용 조치된 분 직접 조치로 본사 보고된 분과 본사 신설 학령 분
영업 감사	교부 전당조 단속	수급 회부로서 1 건당 1 점	
보행자 단속	자전차 포함	수집 회부로서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절 기 준	비 고
		5 건 미만 2 점 · 10 건 까지 4 점 5 건 초과당 1 점	
불심검문	인지수사검거	강력범구속 1 명당 10 점 도범 / / 5 점	
학·사·범	강력범	구속 1 명당 7 점	
	도 범	구속 1 명당 3 점 불구속 1 명당 1 점	
	치기배	구속 1 명당 5 점 불구속 1 명당 1 점	
	폭력사범	구속 1 명당 3 점 불구속 1 명당 15 점	
	기타형사범	구속 1 명당 3 점 불구속 1 명당 1 점	
반공범 및 국	간첩 무장·공비	구속 1 명당 50 점	
가보안법 범	기타사범	구속 1 명당 10 점 불구속 1 명당 5 점	
우범·자판찰	개인별 담당 (감·율·병 공히)	대상 5 명당 1 점 재범 발전 및 행 복자 발전 조치 시 1 명 3 점	
요시·인시·찰	/	대상 3 명당 1 점 재범 발전 및 행 복자 발전 조치 시 1 명 3 점	

안전사고 처리	현장조사처리	1 건당 1 점	폭발물·사고·화재 의사·동사·행여 사망자·음독자 등 으로서 분서보고 됨
첨보수집		상보 1 건당 1 점 종보하달 3 건당 1 점 (20 점한)	
도난현장 임검	강력범·도범 검 거시 2 중 듀집	1 회당 1 점	
소재수사시	남달하 병문으로서	5 건 처리당 1 점	
신원조사	*	3 건 처리당 1 점	
선예미남	대외보도원문	1 건당 5 점	
청 소년선도	보도관찰 호적찾아주기	5 명당 1 점 (5 점한) 1 명당 1 점	계속보도관찰분
J.S. A.I.R.	비법자금부기 2회 누설	5 회까지 2 점 6~10회 3 점 10회 이상 5 점	복직지도자 키시 간후 출발시 라도 제수비 치시는 1 회로 갑주

항 목	세 부 사 항	채 점 기 준	비 고
기타경비	비 번자근무시 2종 득점	매 회 1 점	행사경비, 배모 진압등
비 번근무	근무지 정시 (서장)	8 시간이 상 1 회 1 점 8 시간이하 1 회 0.5 점 (5점한)	비 번자로 서방법 단속차출근무등
호구조사	담당세대수	1 ~ 100 세대 5 점 101 ~ 200 세대 6 점 201 ~ 300 세대 7 점 301 ~ 500 세대 8 점 501 이상 10 점	
예비 군운영	파출소 단위 담당 인원	500 명이 하직원공통 (소장 제외) 2 점 501 ~ 1,000명 " " 4 점 1,001 ~ 2,000명 " " 6 점 2,001 이상 " " 8 점	
타격대	서장 의근무지 정시	근무 1 일당 1 점	

교구훈련	소집교양 직장훈련등	1회당 0.5점	
상 훈	개인표창	서장 1점, 시장(국장) 3점 장관(치안국장) 5점, 총리, 대통령 10점, 훈포장 15점, 대의 3점	
	파출소난체표창	개인표창 누적의 1/2	
외근주관자 재량점수	평시외근무성적 지시명령이행등 삼각우수자 풀 양자의 조정	파출소근무인원의 20%안도내 5점 50% 3점 30% 1점	
서장재량점 수	"	파출소근무인원의 20%안도내 10점 50% 8점 30% 5점	

(감점사항)

항 목	세 부 사 항	재 감 기 준	비 고
사체경비	무기관리	손실 불량 · 채손	2 점
	총기 실탄의 휴대 · 오경적부	지시위반 · 매회당	1 점
	망 실	1 건당	2 점
	훼손 · 불법 대	" "	1 점
복무규율 및 근태	복무위반 · 지시명령위반	제 씨	1 점
	지침 · 조례	1 회	1 점
	조회불참	1 ~ 2 회 1 점 3 회이상	3 점
	무단결근	매 회	3 점
	근무결락	" "	2 점
	기본근무내만	" "	2 점
	병행	" "	2 점
	특수	" "	2 점
	허위 계출	기본전수 미 달	2 점

	도난임검	절락・소음・태만	2점
	신원조사	기밀지연・검당	2점
	소재제공증	"	1점
	우범자 관찰	규정회수・미달 1명당	2점
	요시인 관찰	" " 3점	
	보도관찰	누락・태만 "	1점
	서류점리	배회	2점
	(보고지 연회・한흔철 등)		
	경고 (체고상포함)	배회	5점
정 계	전 채	"	10점
	상 봉	1월 15점・3월 20점・6월 30점	

별표 3 외근성적평가에 따른 서·파출소별 규밀현황

서 급별		A 급	B 급	C 급
증 부	17	형동·율2·율3 율4·총2	영회·영4·총5·청6·율6·장총·남산· 목정·필동·주자·퇴6	공원
종로	21	광화문·총1	세종·와룡·신문·침진·송현·가회·사적· 종2·종3· 관수·대묘	소격·효자·제동·침운·내자·흑인·통의· 규정
남대문	15	역전·남대문	회현·양동·소공·동자·남3·도동·후동· 후북·후서·남산	
서대문	18	영천·만리·서해· 문·봉계·연회	대현·안산·신촌·서소문·의주로·만리2· 독립문·총점·교동	세검·현적 교남·북아현
동대문	18	종5·신설· 동묘·종6	효계·혜화·보문·고사·신용두·창신·종4· 옹두·창청·용남·명륜·낙산·역산·원남	
용산	19	역전·이태원· 원2·삼각지	갈월·남영·청파·동부·한남·북한강·용산· 원4·보관·원1·용기·서빙고·효창·도원	

		북한남		
성 북	18	걸음·월곡, 송인	종암·북선·돈암·서선·정승·성암·인영· 남송·동선·정수·안동	안서·경동 삼선·성북
청양리	20	역전·청양리 남용두	정승·휘경·홍승·중탕·제기·이문·장안· 답십·기축·신당·수문·경춘·전곡·망우	중화·면목 공능
마포	18	노고산·서아 현·남공덕	남아천·엄리·남일리·공덕·동아현·동교· 아현·도화·마포·현석·신공덕·서강·서 교·대홍·신고	
영등포	16	역선·영등포 송양	군래·광량·남송·오봉·여의도·오류·양 평·구로·당산	도립·고척 신곡·양동
성동	22	금연·용무 영미	아직·광활·금호·성구·금수·금남·마장· 중현·무악·약수·옥수·유락·행용·사근	금속·운봉 금곡
노량진	19	대방·남간강 명수내·노량진	상노·판의·상성·동작·신길·배운·봉천· 대림·신림·내신	신평가산·신 동·남성·관단
농 부	12	천호	성수 1·성수 2·하양	광장·신양 구첩·송파

서	금별	금	금
			언주·태왕· 하일·처여·
서부	11	가 과	대조·옹암·홍남·온평·불광·홍운· 수색
북부	9		갈현·역촌· 북가과
		수유·삼계·장위·장제·우이·도봉· 산양·봉단	노래
제	253	167	34

별지 4

평점순위자명부

가. 개인별 성적 우수자

4. 개인별 성적 불량자

급별	소속	제급	성명	병첩	독첩	감첩	비고

다. 과학소장상 서보

사 령

◎ 1969년 10월 20일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 윤영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69년 10월 22일

구화정과 지방토목기원 보 김영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69년 10월 31일

공무원교수원 행정사무관 한상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69년 11월 1일

상무과 계경서기판 안국기
행정서기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산업국 상무과장에 보함

기전과 전기기자 김인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함

토목과 지방전기기사 김수온
전기기사에 임함

로목과 조명시 설 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복구수도사업소 행정서기보 안 대식
철도청 대전철도국전출을 명함

신재일

서울특별시 전일을 명함

지방건축기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김炳권

서울특별시 전일을 명함

지방지적기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이성관

서울특별시 전일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서무과 근무를 명함

김용

조선부지방 행정주사보에 임함

청소제 1과 근무를 명함

김의석

조선부지방 사세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안영희

조전부지방사세서기보에 입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건축기원보 입상규

운동장근무를 명함

지방재경주사 베학윤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1,560 원을 급하

성동구근무를 명함

지방사세주사 강태원

지방행정주사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2,080 원을 급하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성홍창

지방건축기원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110 원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주환

독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이소녕

토목시험소 지방토목기사 이재명
한강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유내형

조전부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중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소남천

지방임기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녹지파근무를 명함

기전파 선기기과 경인주

지방전기기과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공월 850 원을 급함

수도국기전파장직무에리를 명함

시립교향악단 차석연주자 박재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명함

박재우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⑤ 1969년 11월 5일

정우승

조전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인사과	지방간호기사	임순애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면함		
인사과	중부병원	지방간호기원	김성희
인사과근무를 명함			이동근
조건부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운수제1파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정원섭	
기획파근무를 명함	기획과	지방행정주사	박성우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운수사업과 조건부지방기체기사보	조율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명함			
증기관리사업소	지방기체기원보	강인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명함			
부산구	지방행정주사	이계율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청소제1파근무를 명함	세정과	지방재경주사	김종구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아파트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이종환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증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건 석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사서기보 함 동 윤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종 구 지방행정서기 곽 정 인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근무를 명함

종 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두 식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종로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차 경 현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성북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사서기 유 지 을

정부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임입기원보 김 총 태

공무원 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김 구 벽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성북구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전기기사보 김 철 학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운동장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사세서기보 최 광 익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황 우 용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래 흥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마포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적기원 김 동 찬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중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강 상 만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정 완 응

공무원교육원 과정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p>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죄 상 을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동부도지구회장리사업소근무를 명함</p> <p>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죄 문 훈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성북구수도사업소 지방재경서기보 송 인 택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신 재 훈 성동포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신 난 표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종로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유 낙 철 공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노 건 님 광우원교육원파견근무를 대체하고 선북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이 관 대 광무원교육원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마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노 순 형</p>
--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보 박동준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문규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권영기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연료과파견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약무기원 정병호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중로구보건소파견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유영진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보건과파견근무를 명함
마포구수도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덕성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주택행정과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학모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중구파견근무를 명함

<p>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예 규 삼 공무원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선재석 공무원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성북구 과전근무를 명함</p> <p>마포구 지방건축기원보 김영구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진섭 공무원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용산구 과전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한광구 공무원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서대문구 과전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김준길 공무원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과전근무를 명함</p> <p>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호섭 공무원교육원 과전근무를 해제하고 성동구보건소 과전근무를 명함</p> <p>녹지과 지방인접기사 이강선 동계과 지방환경서기 이동수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신현호 마포구 임입기원 손근토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제경서기 최선웅</p>
--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전기기사 김교복
북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 유정호
성북구보건소 지방약무기원보 신완규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중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박웅나
공무원교육원 가전근무를 명함
해체함
김양경
조전부로목기사보에 임함
한강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관 홍윤재
복직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재경서기보 이복식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충부병원근무를 명함
⑤ 1969년 11월 8일
마포병원약제과장직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약무기사 김영식
마포병원약제과장직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동우
복직을 명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 1969년 11월 10일

보성군 지방농업기원 박형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업기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김충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박재도
예산과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기창
사회과근무를 명함
사회파 지방행정주사 김근수
남대문근로자합숙소근무를 명함
남대문근로자합숙소 지방행정주사 이승순
토목사업소근무를 명함
삼성직업보도원 지방행정주사 한규익
방역사무소근무를 명함
방역사무소 지방행정주사 김희성
성북구근무를 명함

서예문구 지방행정주사 심 균
 삼성제일보도원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박 기 우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백 흥 기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보건기사 안 상 경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박 영식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 정 현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백 은 수
 남대문군로자법속소 지방행정서기 박 영 순
 서예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이 익 생
 조전부지방수의원보에 입학
 성동구근무를 명함
 수도국기전과 지방전기기과 김 인 주
 지방전기기과에 입학
 4호봉을 급함
 수도국기전과장에 보함
 ◎1969년 11월 11일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조 청 배

69.12.31 까지 을수제 2차

파전근무를 명함

◎ 1969년 11월 12일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이 학 수

복직을 명함

건축과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길 만 용

양로원 지방행정주사보 윤 기 선

원에 위하여 그 직을 명함

◎ 1969년 11월 15일

지방보전기술 김 예 인

7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원보 나 성 규

7호봉을 급함

남부도지구획정리사업소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술보 박 연 석

7호봉을 급함

제관사업소근무를 명함

지방보록기원보 김 채 훈

7호봉을 급함

수도관리사업소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신 소 자

지방간호기원보 윤영선

7호봉을 급함

충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위향천

7호봉을 급함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박부석

지방간호기원보 하명자

7호봉을 급함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이승자

7호봉을 급함

첨신 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김성희

7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신명숙

지방간호기원보 흥남여

지방간호기원보 나숙일

7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장윤원

7호봉을 급함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강봉주

7호봉을 금합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동래물구 지방영기서기 강우석

용산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제경서기보 이우종

영정서기보에 임함

5호봉을 금합

양정과근무를 명함

전현우

서울특별시 전일윤 명함

지방농업기원 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학

근속가장 월330원을 금합

성동구근무를 명함

이낙성

지방보건기원 보에 임함

7호봉을 금합

중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제당찬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 김경상

농정과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보	권 순 호
"	"	이 세 용
"	지방수의원	김 명 호
"	"	라 정 태
용산구	지방수의원보	김 금 곤
성동구	"	이 규 춘
농정과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보	안 경 환
영등포구	지방수의원보	김 기 균
성동구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원	정 총 환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수의원보	이 규 본
용산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수의사보	조 승 험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농진과	지방수의사	이 하 춘
"	지방수의사보	전 영 훈
"	"	김 세 동
"	지방수의원	유 갑 용
"	"	홍 순 오
"	지방수의원보	김 바 의
가축위생시험소근무를 명함		

일 병 규

조선부지방사세서기보에 임함

동래문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 문 규

청 소재 1 과 조선부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구의수원지사부소 지방토목기사 김 전 육

월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조선부지방행정주사보 이 관 용

지방령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 1969년 11월 17일

행정과 지방령정주사 강 길 훈

법무과 지방령정주사보 박 쟁 성

공무과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박 석 기

행정과근무를 명함

시민과 지방령정주사 이 관 속

서부과근무를 명함

서부과 박 쟁 시

구찌정리과근무를 명함

총무과 김 용 님

연료과 이 동 걸

사회과	지방행정주사	이 만 우
운수체 2 과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손 동 수
연료과근무를 명함	운수체 2 과	신 상 육
사회과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이 띠 원
의약과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	홍 현 국
	상도구	임 전 십
영등포과근무를 명함	관자과	박 광 진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운수장	이 겸 호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기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풍 밥
감사과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김 영 득
의약과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이 상 걸
남부자동차운수근무를 명함	동대과	노 재 유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방역과장 지방비두기과 박 인 설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친호지소장에 보함
 성동구보건소친호지소장 기우선
 성북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방역과장에 보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영규
 행정과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정찬원
 시민과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주사 김유영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이찬원
 종로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의누기과 기우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재에 처함
 성동구수도사업소지방재경서기보 함종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2·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면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성기화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동구 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차장 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종만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조재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견책에 처함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정석
성·북구 지방재경서기보 송성무
도·로·과 지방토목기원보 이종하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윤옹구
영등포구 지방사세서기보 함동윤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황우웅
성·북구 지방토목기원보 조정규
노량진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신덕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중구 지적기원 김동찬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용산구 지방병천주사보 청진영
 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400 원을 급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용산구 행정주사보 청진영
 교동부전출을 명함
 ◎ 1969년 11월 20일
 행정의사관 김한상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에 보함
 " 김진하
 서울특별시 산업국장에 보함
 행정의사관 장지운
 서울특별시 관·공·군·수국장에 보함
 " 이석출
 서울특별시 청소국장에 보함
 " 심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보함
 " 서기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보함
 " 기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보함
행정부이사관 이상익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보함
이우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보함
홍석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1 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해제함

김건우

조선부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진설
성동구 지방사세주사보 오동환

용산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박선설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양정파 제경주사 이명재

복직을 명함

통계과근무를 명함

경리과 지방제경주사 이병익

복직을 명함

아파트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경리와 지방재경주사 이 총 영

복지율 명함

통계과근무를 명함

지방재경주사보 한 성 기

복지율 명함

양정과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행정서기관 한 연 국
물농경제과장에 보함

청소제 1과 청소제 1과장 김 두 길
행정과장에 보함

보건과 보건과장 보전기정 김 창 순
보건제 1과장에 보함

냉정과 냉정과장 냉정서기관 윤 나 한
보건제 2과장에 보함

관리과 관리과장 안 찬 회
관리제 1과장에 보함

기획과 기획과장치누대리 행정사무관 이 은 새
관리제 2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중 구 중무과장 국 응 호
기획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충무과 시장실 지방행정사무관 박 수 복
청소제 1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감사과 감사제 3제장 문 무 봉

시장실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3-4층 행정과장 행정서 기관 이인재
건축제 1과장에 보합

건축과 건축과장 건축기정 황숙제
건축제 2과장에 보합

조경부지방행정주사보 남해군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관제과근무를 명함

조경부지방행정서기 배창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예산과근무를 명함

김종협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보건과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과 심형윤
감사원전출을 명함

◎ 1969년 11월 24일

지방토목기원 염형국

지방토목기사보에 주서함

◎ 1969년 11월 25일

상 형 식

서울특별시 선임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김운경

서울특별시 선임을 명함
조선부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이철진

서울특별시 선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운수제 1과근무를 명함

보건과 보건과장 시장경찰서누관 이철진

보건행정과장에 임답

■ 공해방지체상 ■ 김철민
환경위생과장에 임함

■ 강역과장 지방보건기과 유익현
방역과장에 임함

■ 지도제장직무내리 지방보건기사 연상식
보건자도제장직무내리리를 명함

■ 위생과장 지방경찰서누관 이유성

식 품 위생 계장에 임 합

관리과 건설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호진
건설행정계장에 임 합

“ 중기관리계장 ” 이상식
중기 관리 계장에 임 합

“ 시설관리계장 ” 강대언
시설 관리 계장에 임 합

“ 공지관리계장 ” 신태식
공지 관리 계장에 임 합

“ 주택행정과 주택내시계장 ” 안종윤
건축 행정 계장에 임 합

“ 주택개량계장 ” 최종필
건축 개량 계장에 임 합

건축과 건축계 계장 지방건축기과 유태현
건축계 1 계장에 임 합

“ 건축계 2 계장 ” 김대로
건축계 2 계장에 임 합

“ 상무과 물가분석계장 ” 남상수
도매시장 계장에 임 합

“ 방호과 제1계장 조건부지방행정사무관 이경배
심사분석 계장에 임 합

“ 관리과 보상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병석
감사제 3 계장에 임 합

충구 청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동철		
방호제 1 제장에 임함		
세정과 세정제장	/	김재양
행정제장에 임함		
행정과 행정제장	/	이홍술
예산제 1 제장직무대리를 명함		
청소제 1 과 서무제장	/	김조권
세정제장에 임함		
아동병원 서무과장	/	심상정
서무제장에 임함		
공우천교 우원교수부	/	윤재형
장비제장에 임함		
중구 사회과장	/	최기판
식품지도제장에 임함		
기획과 심사분석제장	/	조영준
보상제장에 임함		
청소제 1 과 장비제장직무대리지방행정주사 박승만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유료도로제장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건축과 건축행정제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수철		
총무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사회과	/	방준환
남부직업안전소장에 임함		

운영 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남부직업안정소 소장 정 환 국
세정과 지적기사보 김 동 식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주택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홍 사 성
아동 병원	김 태 완
동부건설사업소	정 응 성
주택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오 종 태
건축과	송 환 상
관리과	이 수 훈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이 수 학
서대문구	신 석 균
건축과 기방행정서기보	백 윤 기
건축제 1 과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행정주사	주 전 홍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성 복
건축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전 호
지방건축기사	허 각
"	도 성 만
"	김 회 역
"	문 충 선
지방건축기사보	권 태 정
"	조 규 찬
"	김 연 창

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이 금 수
"	박 용 서
건축제 2 과근무를 명함	
" " 박 동 회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건축과 지방건축기원	이 영 수
"	한 송 일
"	조 닥 균
건축제 2 과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수 교 신
보건제 1 과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유 영진
보건제 1 과과건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주 전
"	이 성 복
" 지방보건기사	김 풍 닉
"	김 형 흥
"	이 중 권
"	박 상 현
" 지방간호기사	이 금 선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김 정식
보건제 1 과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보건기사	최 성 식
증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이 규 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이 한 춘
성동구	"	최 형 목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배 순 혁
경기파	"	김 찬 주
보건과	"	이 석 중
"	지방행정서기	김 종 협

보건제 2 과근무률 명함

판단파	지방행정주사	최 호 민
"	"	김 시 영
"	"	율 치 중
"	"	김 선 구
"	"	이 후 적
"	지방행정주사보	진 양 혁
"	"	신 용 철
"	"	박 장 수
"	지방행정서기	신 창 식
성북구보건소	"	조 광 형
판단파	지방재경주사	조 기 균
"	기체기사보	신 영 철

관리제 1 과근무률 명함

관리파	지방행정주사	강 수 응
-----	--------	-------

관리과 지방행정주사	문	현	식
주택행정과	안	재	환
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최	여	윤
"	"	변	경
"	"	김	운
"	"	김	영
"	"	노	운
"	지방행정서기보	김	해
"	지방토목기사	성	나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원	이	송
관리제 2 과근무를 명함			
동대불구	지방행정주사	김	동
영등포구	"	왕	호
관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임	명
상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선	충
물동경제과	지방행정주사	하	진
물동경제과 근무를 명함			
종 구	지방행정주사	하	진
감사과	지방행정주사	한	철
과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	오	남
사회과	"	임	상
관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우
관계과 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우
	영		

경리파군부를 명함

주택행재파 지방재경주사 노 중 현

아파트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 지방행정주사 최 성 기

동부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기획파 지방행정서기 김 정 인

동대문구보건소 " 이정근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은 태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 " 윤갑영

중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김 전호

성동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신장근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건축기원보 송한영

용산구근무를 명함

동대·은구 지방행정주사보 과봉윤

도시계획파근무를 명함

서초파 " 염봉환

시설파근무를 명함

영등·도구 지방행정서기 윤금선

부여 보호지도소근무를 명함	
영동포구 지방행정주사보 고 진 구	
군역사무소근무를 명함	
방역사무소	유상녀
동대문구근무를 명임	
영동포구	정난수
일부파견무를 명함	
	장예술
중구 지방정성서기보 신정근	
시민파견무를 명함	
◎ 1969년 11월 26일	
승로구수도사업소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김난기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근무를 명함	
◎ 1969년 11월 27일	
조건부지방행정주사보 조국관	
기획파견무를 명함	
	박희수
승로구근무를 명함	
	조관
중구근무를 명함	
	김형식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행정주사보 김 위 훈
성북구근무를 명함	홍희경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이병우
한강건설사업소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토목기사보 박제병
중구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사세서기보 지광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이범산
성북구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토목기원보 권문현
◎ 1969년 11월 29일	
7호봉을 급함	지방보건기원보 오창섭
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	김남홍
4호봉을 급함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간호기원보 정경자

충부병원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간호기원보 김귀순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

박자삼

이숙개

김성자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서경희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박찬순

영등포보건소근무를 명함

정성자

중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리원보 김우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조전부지방농업기원보 김진구

지방농업기원보에 입함

7호봉을 급함

양정과근무를 면함

◎1969년 11월 30일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서동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 계획 소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8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지내 도시계획 소로를 다음
과 같이 결정 고시함。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키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혼란에 공
함.

구분	등급류별	번호	목	인장	기점	종점	경과지	비고
변경 전	소로	2	14	8 1,116	이문동 292-4	이문동 341-10		
변경 후	소로	2	14	8 1,108	"	"		

1969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호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지내 가로

일부변경 실시 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지내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경영 사업 집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구
내 일부 가로 변경하여 동 사업실시 계획인가하였기

고시 함。

1. 가로변경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비고
소로	2	1	8	722	414미터로 축소
"	2	4	8	722	신설
"	2	5	8	722	"
"	2	6	8	722	"
"	2	7	8	722	"
"	2	8	8	712	"
"	2	12	8	215	"
"	2	9	8	215	"
"	2	10	8	215	"
"	2	11	3	215	"
"	2	13	8	210	"
"	3	5	6	258	폐지

2. 사업자 지정조서

가. 사업의 종류 : 일반의 주택시설에 관한 설설

나. 사업집행자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업 관리보

다.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간강터미

지구 (100-255번)

라. 사업의 차수와 출공예정일

착공 : 1969. 10. .

준 공 : 1970. 12. 3.

1969년 11월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84호.

서울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집행자를 다음과
과 같이 폐지 및 지정하였기 고시함.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합.

1. 사업집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운동 산 265 의 1 의 14 빌지
(22.529 평)

2. 사업명: 일단의 주택지 경영에 관한 시설

3. 사업기간: 1968.3.5 ~ 1970.12.31.

4. 사업집행자

가. 폐지 (종전사업집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 전영래

나. 지정 (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동 84-45 박지수

1969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8240

◎서울특별시고시 제85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고시함.

196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등록 번호	공상명	소재지	대표 성명	사료			사료성분 양				유효기간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소난백	소사방	조심유	조회분	부터	까지
266	유경사 묘광업 사	동대문구 제기동 998	유시연	양계용 기초비 합사료	양체봉 기초사 료제 조분	배합사 료제 조분	15.0 %	3.0 %	6.0 %	5.0 %	69.11.27 71.11.26	
267	"	"	"	"	"	양계용 우수 사료	"	"	"	"	"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43호

1. 1964.7.3 서울특별시 공고 제 360호로 환지 치분
한 대현도지구 회정리지구 중 아현동 291-10에 대하여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이 일부 환지를 변경함。
별첨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서 무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송부함。

1969. 11. 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246호

수유토지구 회정리지구 청 산 금액 결정통지서를 69.10.
21 일자로 각각 송달(수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의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도시계획법
제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69. 11. 8.

서 울 특 별 시 장

동명지 번	파도경	감도평	교 부 청 산 금	정 부 청 산 금	수 금	주 소	성 명
미아동 139-31	2.00			37.224	장위동 168-444	장 위 동 168-444	장 寿 吉
" 121-15		2.70	5.193			미아동 245	미 아 동 245
" 136-25		10.30		231.296	" 1119-39		外 1 金 水 榮
" 317-4		1.30	3.1983		" 165		주 용 복
" 328-3		1.60	2.432		" 298		박 춘 원

동명지번	과도평	감도평	교부 청 산금	정성 산금	수 주 소	성 명
미아동 132-30	2.20			51.158	신설동 124-21	金 嘉 漢 李吉柱
" 316-4		1.10	23.194		명륜동 1 가 36-40	
" 329-17		1.00	19.851		동암동 산 2	朴 永 詩
" 313-65	3.40			59.931	미아동 703	윤주식
" 319-18	1.70			38.299	" 257	조누운
" 209-1		0.40	15.052		" 784	성 갈복
" 314-17	1.10			19.823	용수동 73	황준태
" 325-15	1.20			25.023	미아동 719-16	황구진
" 311-4	1.40	23.716			" 278-6	심복수
" 139-30	2.00			35.468	용산동 2 가 8	한규진
" 308-21	1.40			23.952	미아동 763	박웅제
" 198-13		1.35	38.870		" 111	李今林
" 301-18	1.42			23.461	보은동 3 가 1-3	전충식
" 302-18		1.00	15.069		수유동 산 131-43	김동호
" 313-34	2.12			38.876	신정동 323	김정자
" 137-18	9.90			251.925	충암동 12-34	김 두
" 303-41		1.00	18.892		" 409	李成姬
" 211-15	0.10			1.950	미아동 211-5	주영익

◎서울특별시광고제 248호

제 목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2493호 (66.6.21)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홍제동
지내 도로공사·구역내에 저축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을 수용교자 도시계획
법제 12조 및 토지수용법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 사 명: 홍제동 지내 도로공사

나. 재산의 당시: 별지 재산의 내역과 같음

1969. 11. 10.

서 울 특 별 시 강

토 지 조 서

No	분할 전 표 시					분할 후 표 시					판 계 인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성 명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성 명	
1	홍제동 294-4	대	106	홍제동 298	원 익현	홍제동 294-4	대	59	홍제동 298	원 익현	인천시 계산동 332-1 동성합
2	"	"	107	"	김 윤식	"	"	21	"	김 윤식	소공동 35-T 효성통신 Co.
3	"	"	264-8	264	원 전만	264-8	"	8	264	원 전만	
	"	"	20	"	원 전만	264-7	"	264-7	264-7		
				264-7							

No.	분 할 전 표 시					분 할 후 표 시					관 계 인
	소재지	자목	지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소재지	자목	지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4	홍제동 295-22	대	130	정동 24	주점우	홍제동 295-22	대	43	정동 24	주점우	한일은행
5	"	"	210	홍제동 298	원익현	"	"	42	홍제동 298	원익현	소공동 65-1 효성물산 Co.
6	"	"	101	"	신일기업 Co.	295-20	"	3	"	"	신일기업
7	"	"	11	294-26	백용주	295-21	"	9	294-26	백용주	신탁는녕
8	"	"	25	"	원익현	294-27	"	7	"	원익현	인천계산동
9	"	"	100	298	"	294-4	"	39	"	"	동성합판 Co.
10	"	"	193	"	"	295-26	"	193	"	"	"
11	"	"	22	"	"	298-8	"	22	"	"	"
12	"	"	"	"	"	294-5	"	55	송은동 102-1	김상호	홍제동 294 회진호 신녕동 333 김귀자
13	"	"	"	"	"	294-29	"	11	294-29	이원희	"
14	"	"	"	"	"	294-28	"	11	294-28	임명희	"
15	"	"	"	"	"	294-23	"	5	294-23	임명용	"
16	"	"	"	마동기	"	294-34	"	8-4	294-23 마동기	"	"

No.	분 할 선 표 시					분 할 후 표 시 (수용)					관 계 인
	소재지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 목	지 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7	홍제동 294-31	대				홍제동 294-30	대	32	홍제동 294-28 옹은동	294-13 294-28 221-6 박용철 임병희 백남규	
18	"	"				" 294-21	"	8	홍제동	294-21 박동섭	
19	홍제동 294-23	"				" 294-23	"	3	홍제동 294-23	정명순	
20	"	"				" 294-22	"	2	294-22	이종구	
21	"	"				" 294-20	"	3	294 옹은동	임병호	
22	"	"				" 294-19	"	9	294 290	김광연	
23	"	"				" 294-33	"	2	홍제동 294	임병웅	
24	"	"				" 294-24	"	6	294	임병웅	
25	"	"				" 294-18	"	4	불광동 310-6	김억만	
26	"	"				" 294-17	"	3	홍제동 294-26	백용주	
27	"	"				" 294-16	"	14	323-12	현성옥	
28	"	"				" 294-14	"	5	294-14	송인현	

29	홍제동 294-23	대				홍제동 294-15	대	17	홍제동	임병총
30	"	"				" 294-13	"	12	"	곽옹철
31	"	"				" 294-12	"	9	홍은동	백남규
32	"	"				" 294-11	"	5	홍제동	양회승
33	"	"				" 294-10	"	11	"	한문기
34	"	"				" 294-9	"	3	홍제동 294-13 294-23 홍은동 221-5	곽옹철 백남규 양회승
35	"	"				" 294-8	"	7	홍제동 294-8	박병윤
36	"	"	2			" 294-3	"	4	홍제동 294-3	강용걸
37	"	"				" 296-8	"	22	홍제동 296	전덕현
38	"	"				" 295-25	"	23	"	원덕현

◎서울특별시 공고제 253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실시 공고

광우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 실시 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음을 공고함。

변경내용에 대한 관지서류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음。

가. 시행지구

당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 중화, 상봉, 신내,

광우동 각 일부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 중화, 상봉, 신내,

광우, 묵동 각 일부

나. 시행면적

당초 : 3,820,515.17 m² (1,155,700.7 평)

변경 : 6,471,773.58 m² (1,957,702.2 평) 중

공남동 269.269 평는 재외

1969. 11. 1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254호

분묘이장공고(제1차)

K-16 이설사업지구(경기도 광주군 대방면 지내)

다음 표시 분묘에 대하여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농법시행규칙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진급 이장할 것을 공고함.

『다음』

1. 분묘의 표시 : 아래 분묘지 표시 참조
2. 이장기간 : 1970. 1. 17. 까지
3. 관리인 신고기간 : 69.11.30. 까지
4. 관리인신고 : 분묘관리자는 위 신고기간내 당시 관
 강 건설사업소(관리과)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
 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 당시에서 이
 장 처리할 것임.
5. 기타 : 상세한 것은 당시 관광건설사업소(관
 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69. 11. 17.

서울특별시상금협회

분묘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수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수
신촌리	75	신	1묘2기	신촌리	산 6	임	1묘3기
"	산 6	임	1묘2기	"	"	"	1묘2기
"	"	"	1묘1기	오야리	1	"	2묘4기
오야리	1	"	1기	"	1	"	1묘1기
"	1	"	1기	"	1	"	2기
"	1	"	1기	"	1	"	1기

소재지	지 번	지목	분묘수	소재지	지 번	지목	분묘수
오야리	1	임	17	오야리	1	임	1 기
"	1	"	87	"	1	"	9 기
"	1	"	17	"	1	"	13 기
"	1	"	27	"	1	"	13 기
"	1	"	27	"	1	"	1 기
"	1	"	27	"	1	"	9 기
"	1	"	67	"	1	"	6 기
"	1	"	17	"	1	"	2 기
"	1	"	117	"	1	"	5 기
"	1	"	17	"	1	"	1 기
"	1	"	47	"	2	"	20 기
"	산 20	"	27	"	21	"	1 기
"	산 22	"	57	"	21	"	1 기
심곡리	296-1	전	2 기	심곡리	296-1	전	1 기
"	296-1	"	17	"	산 4	임	1 기
"	산 4	"	17	"	316	전	1 기
"	산 5	임	207	오야리	산 22	임	1 기
오야리	산 22	"	27	"	58	잡	2 기
"	58	잡	2 기	"	58	"	1 기
"	22	임	47	심곡리	6	임	1 기
심곡리	6	"	2 기	"	6	"	1 기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수	소개지	지번	지목	분묘수
심곡리	7	임	5기	심곡리	산 6	임	11기
"	산 6	"	2기	"	1-7	신	9기
"	298-1	전	1묘 2기	"	304-2	"	1묘 2기
"	산 1	임	10묘 13기	"	산 2	임	30묘 30기
"	산 3	"	4묘 6기	"	산 4	"	3묘 4기
"	4	"	1묘 1기	"	산 4	"	1묘 1기
"	4	"	7묘 9기	"	산 4	"	2묘 2기
둔천리	140	"	1기	둔천리	168-12	신	1기
"	149-3	"	20묘 30기	"	148-3	임	10묘 20기
"	150-2	대	5기	"	52	"	2기
"	52	임	3기				
			396기				

◎서울특별시 공고제 255호

1. 전설부고시제 2948호 (66.12.17)로 고시된
삼양동~미아리간 도로신설공사 구역내에 저속전입된
토지를 수용코자 도시계획법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사명: 삼양동~미아리간 도로공사

나. 토지위세복: 별지와 같음

1969. 11. 18.

서울특별시장

토 지 분 할 조 서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설북구 미아동	산 112~1	임	4,320	산 112~7	임	31	미 등 기	
"	112~4	"	1,080	112~6	"	54	"	
"	114~1	"	4,230	112~2	"	330	"	
"	638~1	단	75	638~1	단	75	미아동 658	유희옥
"	638~2	"	86	638~2	"	86	" 698	박명복
"	638~28	전	33	638~28	전	33	" 658	윤희옥
"	638~29	"	16	638~29	"	16	" 658	"
"	644	매	34	644	매	34	하월곡동 90~120	이옥임
"	683~7	"	20	683~7	"	20	미아동 683	홍성호
"	703~10	"	68	703~10	"	68	" 703~56	김순용
"	703~43	"	21	703~43	"	21	" 73~43	최동근
"	703~44	"	5	703~44	"	5	" 703~44	권상규

성북구 미아동	703~52	대	52	703~52	대	52	미아동 703~56	김봉순
"	703~4	"	92	" ~4	"	92	종구오양동 206~5	유지성
"	703~38	"	52	" ~38	"	52	하월곡동 88~345	이상기
"	750	"	29	750	"	29	이문동 318~30	이성숙
"	638~30	"	47	638~31	"	5	미동기	
"	640~1	"	228	640~39	"	20	종암동 70~62	성육상
"	645	단	947	645~45	단	430	미아동 693	김형식
"	646	대	21	646~2	대	9	" 646	김병만
"	637~11	"	81	637~328	"	47	필동 2가 124~10	양전석
"	637~326	"	32	" ~330	"	1	미동기	
"	637~44	"	1,915	" ~329	"	662	필동 2가 124~10	양전석
"	637~12	"	24	" ~331	"	9	"	
"	637~118	"	23	" ~332	"	7	"	
"	637~119	"	"	" ~333	"	"	"	
"	637~120	"	23	" ~334	"	8	"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미아동	637~123	대	11	637~335	대	2	필동 2 가 124-10	양진석
"	" ~126	"	20	" ~336	"	12	"	"
"	" ~127	"	30	" ~364	"	16	"	"
"	" ~133	"	50	" ~337	"	5	"	"
"	"	"	53	" ~338	"	5	"	"
"	" ~134	"	10	" ~339	"	9	"	"
"	" ~137	"	18	" ~340	"	12	"	"
"	" ~138	"	13	" ~341	"	6	"	"
"	" ~141	"	24	" ~342	"	11	"	"
"	" ~142	"	70	" ~343	"	16	"	"
"	" ~145	"	31	" ~344	"	0.9	"	"
"	" ~149	"	43	" ~346	"	1.1	"	"
"	" ~151	"	16	" ~347	"	3	"	"

(0785

-93-

미아동	637~153	대	21	637~848	대	5	필동2가 124~10	양전석
"	" ~154	"	24	" ~849	"	8	"	"
"	" ~156	"	28	" ~350	"	11	"	"
"	" ~157	"	11	" ~351	"	8	"	"
"	" ~237	"	33	" ~352	"	11	"	"
"	" ~236	"	52	" ~353	"	29	"	"
"	" ~234	"	4	" ~354	"	2	"	"
"	" ~64	"	414	" ~357	"	25	"	"
"	"	"	414	" ~358	"	35	"	"
"	" ~295	도	2	" ~359	"	"	"	"
"	" ~293	대	2	" ~360	"	"	"	"
"	" ~290	"	98	" ~361	"	90	"	"
"	" ~304	"	43	" ~362	"	38	"	"
"	" ~305	"	63	" ~363	"	45	"	"
"	260	노	180	" ~355	도	4	"	"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병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미아동	260	도	180	637~356	도	3	필동 2 가 124~10	양전석
"	670	대	1.701	670~21	대	547.8	충북청주청주읍서정 65	민주식
"	670~16	전	16	670~24	전	0.3	미아동 산 94	박원순
"	645~1	대	232	645~46	대	98	"	"
"	670~17	전	185	670~25	전	113.3	"	"
"	" ~18	대	1.257	" ~27	대	262.5	명륜 2 가 1	제단법의 천주교회 미동기
"	682~1	"	1.416	682~2	"	278	"	"
"	683~2	"	18	683~8	"	14	미아동 683~2	박종식
"	" ~6	"	22	" ~9	"	0.7	" 683	윤범호
"	684~1	"	404	684~8	"	155	" 684	미동기
"	687~1	신	220	687~5	"	98	" 688	박명석
"	688~2	대	238	688~6	"	78	"	박홍열
"	734~37	"	95	734~133	"	29	안암동 4 가 29~1	하중효

미아동	734~108	대	3,024	734~136	대	573	안암동 4 가 29~1	하증효
"	" ~107	도	688	" ~137	도	15	"	"
"	" ~109	대	899	" ~138	대	15	"	"
"	791~228	"		"	"	7	미아동 771~2247 121~48	합용원
"	703~1	전	105	703~87	전	97	안암동 4 가 29~1	하증효
"	" ~2	대	76	" ~88	대	4	미아동 703~2	손영화
"	" ~33	"	54	" ~95	"	9	" 산 111	황우복
"	" ~3	"	144	" ~96	"	5	안암동 121~48	미농기 하증효
"	" ~7	진	330	" ~104	진	251	돈암동 384~12	정구선
"	" ~5	"	147	" ~89	"	35	미아동 715	윤수익
"	" ~6	대	141	" ~90	"	8	" 703~6	이교칠
"	" ~80	"	17	" ~105	"	2	"	"
"	" ~13	전	801	" ~91	"	43	미아산 111	이외철
"	" ~56	대	37	" ~104	"	4	" 703~56	김순봉
"	" ~74	"	3	" ~101	"	2·6	" 703~55	박복희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미아동	703~53	대	64	703~99	전	59	미아동 703	이영삼
"	" ~31	"	112	" ~94	"	65	" 736	윤금석
"	" ~45	"	14	" ~102	"	9	" 75	김종범
"	" ~42	"	13	" ~42	"	12.5	" 703~34	이범운
"	" ~40	"	23	" ~91	"	2	" 703~4	기인재
"	" ~46	"	6	" ~103	"	0.8	" 11	이구칠
"	" ~30	"	92	" ~93	"	63		
"	749~3	전	92	749~30	"	1	미아동 749	방준태
"	" ~14	"	15	" ~31	"	2	" 735	미동기
"	751	대	43	751~2	대	4	" 723	윤범산
"	752~1	답	792	752~6	답	306	" 23	김현창
"	" ~2	대	60	" ~7	대	34	영동포산 1	오복수
"	759~4	"	43	759~4	"	37	미아동 723	김현창

미아동	759~5	대	39	759~5	대	31	미아동 759~5	김종준
"	" ~10	"	37	" ~10	"	31	신설동 150~10	한필이
"	" ~11	"	37	" ~11	"	33	미아동 759	임홍근
"	" ~17	"	175	" ~28	"	133	" 723	김현창
"	" ~21	"	171	" ~29	"	88	"	"
"	760	"	883	760~114	"	432	농·민·농 4·가 78	서장위
"	776~1	"	430	776~2	"	49	미아동 산 112	이재수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8 호.

경포도지구 확장리사업 변경 실시 공고

당시가 시행하고 있는 경포도지구 확장리사업의 변경 실시 계획이 구획정리사업
법 제34조에 의거 69.11.12 (집선부공고 117호) 변경 입가경의 아래와
같이 실시 할 것을 공고함.

구 분	택 지	도로	광장	비 고
당 초	3.517.340 (1,063,990 평)	1.160.304 (350,990.37 평)	27.580 (8,349 평)	
변 경	3.513.943 (1,062,963 평)	1.148.329 (347,368 평)	40.998 (12,402 평)	

1969. 11. 20.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1호

1. 건설부고시제 2493호 (66.6.21)로 고시된 당시 시명 남가좌동~북가좌동간 도로공사 구역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코자 도시 계획법 제 12조 토지수용법 제 20조 및 동법시령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함。

가. 공 사 명: 남가좌동~북가좌동간 도로공사

나. 시 행 청: 서울특별시

0788

169

다. 토지 세목: 별지와 같음。

1969. 11. 21.

서울특별시장

보지조사서

소재지	분합전			분할후			주소	성명	비고
	자번	지목	지적	자번	지목	지적			
북가좌동	104~2	대	90	104~4	대	37	서대문구 북가좌동 104	신삼산	
"	~3	"	221	~3	"	157	"		
"	103~2	"	63	103~4	"	21		미동기	
"	102~3	"	65	102~4	"	27	북가좌동 103	이태호	
"	107~2	"	47	107~6	"	30	위성동 308-38	김순경	
"	~1	"	66	~7	"	23	북아현동 134-1	김일성	
"	105~1	집	52	105~10	집	11	남가좌동 205	장명진	
"	103~2	대	53	106~6	대	27	"		
"	~1	"	114	~7	"	41	논개동 105-6	이기원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설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북가좌동	115~1	대	39	115~1	대	33	북가좌동 115-1	안성호	
	~6	전	188	~100	전	12	남가좌동 240	강영선	
	~2	답	32	~95	답	7	대신동 90-11	김강택	
	~9	전	608	~96	전	223	만리동 2 가 21	차태길	
	108	■	379	108~2	■	18	북가좌동 75	김재승	
	113~10	대	32	113~10	대	22	■ 113-10	전성일	
	113~	■	138	113~57	■	33	■ 113	김일성	
	~12	전	52	~58	전	14	"	"	
	~16	대	29	~16	대	16	남가좌동 275-4	송금석	
	~4	■	30	~4	■	25	연희동 182	정예환	
	~1	분 묘 지	203	~60	분 묘 지	19	북가좌동 113	성무환	
	114~1	전	306	114~17	전	176	미 등	기	
	115~4	대	98	115~98	대	28	북가좌동 115-18	김충민	

복가 파동	106~4	대	25	106~4	대	25	복가 파동	13-6	박봉석
"	114~10	"	52	114~10	"	52	"	113	조만식
"	115~33	"	29	115~33	"	29	"	115~33	이해순
"	102~2	전	33	102~2	전	33	"	103	이성환
남가 파동	184	"	598	184~2	"	0.7	남가파동	172	김주환
"	185	"	629	185~2	"	312	"	"	"
"	186	"	251	186~3	"	62	"	"	"
"	187	"	186	187~2	"	71	"	"	"
"	188	당	925	188~2	당	493	"	"	김복희
"	190~10	대	20	190~10	대	15	"	"	박은수 외 1명
"	190~11	전	26	190~11	전	25.7	남가파동	182	이기남
"	191~27	대	15	191~27	대	8	"	191~27	장재익
"	191~26	"	16	191~26	"	9	"	191~26	최근미
"	191~30	"	19	191~30	"	14	"	191~30	김강만
"	191~25	당	5	191~34	당	0.7	"	225-5	김미선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남가 좌동	200~13	대	29	200~84	대	8	남가좌동 200~13	윤완순	
"	~15	"	13	~15	"	11	" 197-3	홍현동	
"	~14	"	16	~85	"	1	" 200~14	박용구	
"	~19	"	15	~19	"	12	" 200~19	오경환	
"	197~14	"	26	197~14	"	22.7	문래동 2 가 30-2	김명숙	
"	~2	"	9.	~2	"	5	남가좌동 197-2	백찬기	
"	~10	"	25	~27	"	8	" 197-10	이아지	
"	~19	"	17	~19	"	13	미 등	기	
"	~6	"	38	~26	"	17	남가좌동 197-6	정연숙	
"	117~11	"	558	119~11	"	475	북아현동 23~12	서상용	
"	~33	"	63	~43	"	12	공역동 234	김종식	
"	~32	"	44	~44	"	10	영천동 24	손상봉	근저당설정
"	~36	"	33	~45	"	7	미아동 600	김철부	

남가 파동	119~19	대	36	119~46	대	7	남가파동 119~19	최인규	근처당설정
"	~20	"	44	~47	"	13	" 119~20	이영식	
"	80~14	전	645	80~27	전	74	태평로 2 가 23	한국화약 주식회사	근처당설정
"	115~6	"	215	115~26	"	189	"	"	
"	~11	대	29	~11	대	19	후암동 184~6	최인정	
"	~12	"	36	~29	"	4	공역동 22~30	이정숙	
"	~5	전	1,080	~30	전	300	태평로 2 가 23	한국화약 주식회사	근처당설정
"	116~6	"	140	116~8	"	31	"	"	
"	241~14	대	53	241~14	대	49	용세동 96~4	나상호	
"	~23	"	29	~23	"	27	"	"	
"	~20	"	31	~45	"	10	"	"	
"	~18	전	587	~47	전	123	비동	기	
"	~19	"	433	~49	"	110	남가파동 241~4	김귀례	
"	~5	대	55	~5	대	27	" 168	홍봉신	
"	167~1	"	56	167~17	"	36	" 167~1	이성섭	근처당설정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남가좌동	167~7	대	75	167~5	대	44	남가좌동 167-6	김대경	
"	169~2	전	140	169~12	전	4	후암동 345-25	한인섭	
"	165~7	대	45	165~10	대	3	남가좌동 165	최병환	가등기
"	~6	"	43	~11	"	9	옹암동 305-16	이용기	
"	~5	"	21	~12	"	4	성동구 구암재동 16	최용숙	
"	~2	"	45	~13	"	15	"	"	
"	250~5	"	67	250~31	"	46	남가좌동 250-5	이영진	
"	~9	"	117	~32	"	34	북가좌동 99	이영학	
"	~6	"	71	~33	"	8	서울시	서울시	
"	251~1	"	342	251~19	"	256	북가좌동 100	지희섭	
"	253~2	"	36	253~4	"	0.3	남가좌동 253-2	임동행	
"	~3	"	33	~3	"	29	원효로 4 가 1	김병순	근저당 조용은행
"	254~1	"	153	254~5	"	38	남가좌동 278	박윤근	

남가 파동	256~4	대	43	256~21	대	7	부암동 315	강나주
"	~8	"	43	~22	"	5	남가파동 256-8	최한수
"	~9	"	39	~23	"	5	" 256-9	최억순
"	~16	"	39	~24	"	4	과주군 남진면 분산리 63	정태운
"	~19	"	94	~25	"	18	남가파동 256	김대영
"	258~70	"	183	258~70	"	180	미등기	근저당설정
"	259~12	"	36	259~59	"	9	남가파동 259-12	석창율
"	~13	"	29	~60	"	11	" 259-13	윤태봉
"	~17	"	53	~61	"	27	" 259-17	최용현
"	~20	"	54	~62	"	26	" 259-20	오찬영
"	~29	"	33	~63	"	2	" 259-29	송병순
"	~30	"	21	~64	"	20	" 259-30	"
"	~2	"	70	259~65	"	42	" 259-2	이대성
"	~4	"	52	~66	"	22	주	
"	~32	"	30	~67	"	21	남가나동 259	임관용
							고지 날짜 제작년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남가좌동	260	대	78	260~385	대	25	미 등	기	
"	260~340	"	170	260~386	"	9	안양읍안양리 536	홍현희	
"	~154	"	9	~387	"	3	서 울	시	
"	~179	"	14	~388	"	10	남가좌동산 29-1	이윤식	
"	~177	"	4	~389	"	3	서 울	시	
"	~338	"	32	~390	"	28	남가좌동 260~338	김태미	
"	~348	"	32	~391	"	19	옥인동 47-2	강완형	
"	~349	"	56	~392	"	9	남가좌동 260~349	장성준	
"	268~1	"	39	268~12	"	9	" 268-1	김광우	근처당설정
"	~9	"	31	~13	"	26	명륜동 3 가 272	노진천	
"	~3	"	996	~14	"	409	서린동 81-1	손규홍	
"	269~6	"	46	269~8	"	2	남가좌동산 29	박호찬	
"	191~24	"	25	191~24	"	25	" 191~24	박성빈	

소재지	분 할 선			분 할 후			주 소	성 명	비 고
	지 번	자 목	기 적	지 번	자 목	기 적			
남가 파동	258~79	전	17	258~79	전	17	국		
	260~180	대	24	260~180	내	24	남가파동산 29-1	김봉학	
	~345	"	9	~345	"	9	명륜동 3 가 2-12	노진천	
	~181	"	7	~181	"	7	남가파동 268-1	김광우	근처당 국립은행
	268~7	"	44	268~7	"	44	국		
	258~68	"	19	258~85	"	2	국		
	259~11	"	50	259~58	"	4	대조동 74-130	이옥동	근처당설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4 호

청산수입 독촉장 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 시내 녹번동 27-18 이 성 방 외 32

별첨명단 (3, 475, 619 원)

0793

-100-

1. 역촌지구 청 산수입 득축장 69년 수시분

가. 납입기간: 1969.10.30 ~ 11.10

나. 납입장소: 상입은행 본지점 및 시금교파 또는 당시 서무파
 상기 청 산수입 득축장을 1969.10.30. 발송하였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납입기일을 1969.12.10. 상하여 도시제회법 제16조 1항 및 지
 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69. 11.

서 울 특 별 시 장

수납번호	불 전 지	금 액	천 주 소	성 명	비 고
2	역촌동 37-4	79,244	우편동 27-18	이정양 외 4인	
5	구산동 41	84,736	신사동 41	박상현	
8	구산동 산 52	23,460	구산동 산 52	김춘학	
10	역촌동 126-18, 12	22,295	역촌동 125	서종이	
15	구산동 36	87,429	구산동 36	고경파	
31	이촌동 160-1	153,401	충남동 427	허종찬	

수납번호	물건지	금액	현주소	성명	비고
32	신사동 산6-2	15.612	혜화동 5-45	이경서	
46	역촌동 147-2	105.245	역촌동 146	김택주	
52	# 151-6	109.702	# 168	본정태랑	
53	신사동 산9	65.137	부암동	김성진	
59	# 243-4	50.722	광화문동 104	방종익	
62	# 산 19-1	30.060	신사동 산6	이화자	의1인
65	# 55-3	23.282	# 55-3	이재형	
69	# 217	59.517	# 217	이광달	
76	웅암동 128-2	143.262	평동 28-12	신인석	
87	# 128-3	436.768	웅암동 128	김한규	
92	# 132-4	28.706	홍은동 197	이성복	
95	# 129-17	296.442	홍제동 330-117	윤병학	
96	# 188-12	116.556	제기동 91	김유래	
98	# 127-4 의5	57.122	웅암동 133	윤택준	

105	옹암동 127-13	27,268	적선동 67-3	김종매
108	# 192-6	89,836	옹암동 192-6	조장휘
113	# 124-8	158,381	공덕동 96-6	양재석
114	# 124-13 외 3	204,577	수무로 4 가 12-6	이이한
117	# 198-5	82,967	옹암동 산 4	최진옥
119	# 198-12	50,000	#	정용운
129	# 466-9	103,634	# 240-66	최신규
128	# 466-17	124,527	관천동 11-11	이근성
130	# 214-4 외 2	42,347	옹암동 214	김덕용
131	# 214-14 외 1	270,907	신내방동 113	김영기
137	구산동 37-9	231,889	구산동 75	김성배
139	역촌동 206, 207	67,995	옹수동 207	상기성
140	옹암동 188-13	22,593	옹암동 188-3	신내식
123	# 466-16	10,042	# 419-10	임의숙

◎서울특별시공고제 265호

청 산 수 입 독 촉 장 공 시 송 달

주소 또는 거소: 시내 회현동 1가 25 채 광식 의 89번

별첨 명단 (4,432,600원)

1. 뚝도지구 본 청산수입독촉장 69년 수시분

가. 납입기간: 69.10.22 ~ 11.5

나. 납입장소: 상업은행본점 및 시금교과 또는 당시 서구파

상기 본 청산수입 독촉장을 69.10.22 발송하였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납입기일을 69.12.10.로 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1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69. 11.

서 울 특 별 시 장

수납번호	물 전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14	성수1가 13-52	22,123	회현동 1가 25	채 광식	,
17	# 13-22	21,831	수하동 17	오 윤근	

21	성수 1 가 13-44	29.830	원효로 1 가 23-16	김진배
22	" 13-40	83.700	봉익동 10-2	김교원
24	" 13-46	687	부교동 46	신세영
25	" 13-100	5.640	신방동 304-29	이태근
29	" 13-96	614	신창동 77-28	고동우
33	" 13-92	10.978	충신동 5-77	노규홍
36	" 13-179	7.467	성수 1 가 384-2	이아기
37	" 13-80	7.136	신방동 304-172	유기종
42	" 13-85	2.252	간워동 69	양대조
43	" 13-86	4.504	제기동 67-45	김성근
45	" 13-88	2.815	여의동 179	전노은
46	" 13-89	12.431	충신동 5 가 42-1	권명우
48	" 13-75	14.615	용동 39	김인식
51	" 13-72	9.168	봉익동 10-2	김교수
55	" 13-68	2.292	신방동 206-216	이운교

수납번호	물건지	금액	현주소	성명	비고
58	성수1가 13-55	19,389	의현동 147	최재화	
59	# 13-57	7,372	명봉 1가 54	우기복	
63	# 13-62	11,520	오장동 101	김광식	
64	# 13-61	8,960	종암동 125	제우걸	
66	# 13-65	5,424	한강로 1가 13	길상순	
70	# 13-114 외 1필	25,756	성수 1가 3-13	김금주	
74	# 13-107	1,248	신당동 167	임별기	
78	# 13-140	14,562	홍복청원 군감의면 봉산리 605	김진종	
88	# 13-124	29,937	남영동 56	서문택	
94	# 13-132	34,707	인현동 2가 206	김태웅	
95	# 13-133	14,513	성수 1가 3-52	전장현	
96	# 13-113	6,176	성수 2가 282-12	최중기	
117	# 13-181	2,613	신설동 38-3	오진환	
136	# 14-31 외 4필	569,697	대홍동 53-8	김선옥 외 1인	

147	성수2가 301-31외1필	21,876	초동 106-12	노석복
154	" 301-8 외1필	64,478	남산동 1 가 14-2	김정천
155	" 301-1 외1필	201,828	상광십리동 781	윤홍범
162	성수1가 284-52	4,825	한강로 3 가 40	안정익
166	성수2가 284-18외4	147,114	월운동 86	서강선
171	" 284-31	4,921	동소문동 7 가 28-14	이원도
179	" 284-85외2	17,305	소공동 65-1	대지기업Co.
180	" 284-26	32,387	보문동 7 가 134-10	박명서
194	" 299-56	159,614	금지로 7 가 132	돈관준
196	" 299-30	4,435	창신동 131-100	엄주원
203	" 299-178	2,700	신당동 52-4	김운배
205	" 299-186	2,141	신해동 30	엄성하
206	" 299-177	22,432	인천 6·2 가 182	이의태
209	" 199-175	5,496	인당동 236-264	백우수
215	" 299-163	3,447	성수1가 656	성재범

수납번호	물 전 지	금 액	현 주 소	성 명	비 고
224	성수2가 299-169	11,163	와룡동 132	김명진	
245	# 299-196	9,309	성수1가 656	이병길	
246	# 299-195	14,604	# 656	최호	
250	# 299-61	2,899	신당동 52-401	이영섭	
255	# 299-21	8,947	제기동 148-5	이인수	
283	# 299-81	19,564	낙원동 92-2	정성례	
333	# 299-13	2,404	성수1가 656-35	김현성 외 28인	
346	# 284-66	15,970	인현동 2가 203	이용홍	
377	# 289-15 외 1	25,333	돈암동 245-10	신현기	
378	# 289-13 외 2	42,461	워저동 413	정전실	
379	# 289-14 외 1	19,775	신설동 205-41	박춘기	
387	송정동 81-17	35,181	종로4가 6	김인식	
392	# 81-14	7,223	안암동 1가 152	유시목	
398	성수2가 315-63 외 2	5,265	도선동 14-2	임성희 외 3인	

401	성수2 가 315-54 외 1	50,940	성수 2 가 562	박 명 길
402	" 315-31	58,404	장충 2 가 68-115	김 풍 균
413	" 321-14 외 1	18,830	성수 2 가 958-17	이 중 원
421	" 317-10 외 1	5,670	" 309-10	진 봉 생 외 2 인
423	" 277-18 외 1	8,738	성수 1 가 656-97	고 태 산 외 2 권
437	" 277-21 외 2	186,039	성수 2 가 746	임 대 균
438	" 277-51	14,436	" 238-4	이 경 선 외 1 인
439	" 273-17 외 1	28,277	성수 1 가 353	김 경 현
451	" 277-26	1,416,091	교 동 51	안 병 협 외 1 인
458	화 양 152-26 외 1	5,407	용·우·농 1 가 210	노 진 삼
459	" 152-24 외 1	40,319	남간동 2 가 17	허 충 순
465	" 152-16	9,719	금방동 280-325	옹 성 우
468	" 152-3	8,484	카양동 163-11	문 용 선
473	" 167-17 외 2	88,929	" 132	김 친 순
476	성수2 가 277-29	23,496	성수 2 가 14-67	김 명 뉘

수납번호	물건지	금액	현주소	성명	비고
477	성수2가 277-43 외 1	19.911	하왕십리 53-2	고용중	
479	" 273-2 외 1	18.268	성수 1 가 3	최태봉 외 4인	
492	" 277-37	22.964	마장동 472	김해백	
492	" 277-71	39.375	성수 1 가 278	신철순	
493	" 277-38	5.201	양주군 고양주번비거리 299	손봉갑	
495	" 277-36	1.171	7 의정부 511	김근길	
497	화양 167-56 외 1	67.043	삼선동 5 가 28-3	이경무	
504	" 151-6 외 1	66.072	신당동 94-20	유성복	
505	" 151-2 외 1	84.123	광장동 339	이용조	
508	" 167-3 외 1	22.375	신당동 370~47	김길성	
509	" 167-2	1.403	성수 2 가 257	한수동	
519	송정동 79	112.182	상왕십리 436	문성인	
522	성수2가 332-14 외 1	4.253	하왕십리 127	정홍성	
523	화양 152-22	94.554	용두동 210	노진삼 외 1인	
530	성수1가 13-125	3.863	청량리 205	민병재	

8978

-119-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6 호

제 목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276 호 (69.5.7)로 확정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서울대교 북단입체교차로 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토자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공사명: 서울대교 북단입체교차로 시설공사
3. 보지적 세부(별첨조서와 같음)

1969. 11. 25

서 울 특 별 시 장

도 시 조 서

번호	지 번	지목	지 칙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마포동 156-2	내	1.1	국	
2	# 156-4	#	2.2	마포구마포동 316	이 영 우
3	# 13d-1	#	6	마포구 # 138-1	김 양 자
4	# 156-5	#	3.6	마포구 # 311	이 영 우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5	마포동 138-2	도	1	국	
6	" 137-4	매	48.8	신공역동 130-25	유 준 현
7	" 135	"	15	마포동 155	장 사숙
8	" 136-2	"	27.9	" 155	오 세완
9	" 133-2	"	57.5	" 1-2	지 상길
10	" 132-1	"	28	" 155	김 명중
11	" 131-2	"	16.9	서대문구부암동 237-8	김 창준
12	" 128-1	"	32	마포동 155	김 명중
13	" 127-2	"	7.2	국	
14	" 125-1	"	10	국	
15	" 126-2	"	39.2	성동구신당동 340-11	김 총섭
16	" 124-4	"	83.1	성북구삼선동 5가 19	이 총문
17	" 120-1	"	90	장충동 193-37	한 천혜
18	" 310-9	"	0.4	을지로 1 가 192-11	전주식회사

19	마포동 311-2	대	4.1	마포동 311	이영우·박옥순
20	# 116-1	"	50.1	# 116	김용봉
21	# 310-10	"	12.7	# 310-3	백나황
22	# 310-11	"	2.2	# 310-6, 310-7	조동희·서운하
23	# 115-1	"	47	# 116	김명중
24	# 114-1	"	65	# 114-1	김홍선
25	# 312-3	"	38	서대문구옹암동 427, 113	이경희·이영재
26	# 312-4	"	1.7	마포동 313	유철향
27	# 313-2	"	39.2	# 313	유철향
28	# 314-2	"	16.4	# 314	김진수
29	# 111-1	"	55	# 111-1	의례용
30	# 110-3	"	24.1	# 110-3	주순수
31	# 110-1	"	70.9	# 110-1	윤연갑
32	# 112-1	"	1	#	
33	# 107-5	"	48	불시로 1 가 157	성순영

번호	자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차 주 소	성 명
34	마포동 107-3	대	67	울지로 1 가 157	정순영
35	# 107-6	#	34	신창동 60-1	최원주
36	# 107-4	#	33	울지로 1 가 157	정순영
37	# 106-2	#	41	"	"
38	# 107-7	#	19.6	"	"
39	# 106-3	#	13.8	"	"
40	# 105	#	57	마포동 105	유철근
41	# 104-1	#	.27	북아현동 238-17	강숙자
42	# 103-4	#	25.6	마포동 105	유철근
43	# 103-2	#	48.2	# 103-2	이정석
44	# 102-1	#	15	# 102-1	이정순
45	# 358-2	#	.9.2	# 358	황준명
46	# 359-2	#	.42.2	# 359	공광규
47	# 361-9	#	.15.4	# 361-1	최분종

번호	물 검 지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63	마포동 35-24	대	1.4	미	
64	" 35-25	"	1.2	대홍동 443	이 금 예
65	" 35-21	"	114	미	
66	" 35-26	"	■■■	마포동 655	광 홍 쇄
67	" 35-20	"	21.0	" 35	상 세 오
68	" 35-19	"	9.3	" 35	
69	" 35-18	"	2.6	" 35	
70	" 130-2	"	15.7	" 130	임 인 혁
71	" 129-2	"	12.5	" 169	안 정 익
72	" 134	"	16	" 155	오 세 완
73	" 124-3	"	14.3	미	
74	" 123-1	"	2	국	
75	" 122-1	"	31.3	마포동 122-1	신 상 춘
76	" 122-3	"	45.7	" 310-4	최 명 천
77	" 119-1	"	0.7	국	
			2,748.4		